

1. 개정이유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성능평가 업무의 부실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58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밀진단의 최초실시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안 제28조, 제31조)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교육요건을 포함함에 따라, 정밀진단·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진단·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나. 하도급의 제한(안 제34조의2 신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파괴검사·토질시험·로봇이 필요한 외관조사 등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을 규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시·도에 신고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안 제34조의3, 제34조의4 신설)

정밀진단·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시·도에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상호·대표자·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정함

라.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위탁(안 제34조의5 신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를 평가하여 부실한 경우 수정·보완을 명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의 평가에 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하도록 함

마. 과태료 처분기준의 정비(안 별표6 개정)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재개업·폐업, 양도·양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을 부과하고, 결과평가의 수정·보완요청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하도급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을 부과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으로 한다.

- ⑤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 ⑥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의2의 전문기술

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의3(철도시설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5의3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제34조의4(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44조의6제7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의결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34조의5(권한의 위탁) 법 제44조의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호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동 부칙 제2조제2호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별표 2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철도 신설·개량 등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 또는 장기간 사용이 중지된 시설물에 대하여 그 시설관리자는 정밀진단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의 제목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28조제2항 관련)”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진단 중 “정밀진단을”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로 하고, 같은 표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별 교육을 받아야하며,”로, 같은 표 후단 중 “정밀진

단을”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로 한다.

별표 4 제1호와 같은 표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철도 신설·개량 등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 또는 장기간 사용
이 중지된 시설물에 대하여 그 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
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34조의2제1항 관련)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2. 비파괴재하시험: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반발경도법, 초음파법, 레이더비파
괴검사, 자연전위측정법에 의한 비파괴검사, 페놀프탈레인염색 용액에 의한
탄산화 깊이 측정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콘크리트 및 강재의 결함 또는 성능
평가를 위한 비파괴시험
3. 지반조사 및 탐사: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
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
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래피탐사, 물리검층 등
4.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5. 수리·수충격·수문 조사
6. 계측 및 분석: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
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의
분석, 계측시설에 대한 조사·시험, 차량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계측·분석
7. 수중조사: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8. 누수탐사 또는 전위측정 및 분석
9.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10. 콘크리트 재료시험: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분함
유량시험 등
11. 강재 시료채취 및 시험
12. 구조물분야에 포함된 전기 및 기계설비(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
·시험(건축물은 제외한다)
13. 토양부식환경 조사·시험
14. 내진성능 상세평가 및 시험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

[별표 5의3]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구조물, 궤도, 건축 분야

구 분		구조물	궤도	건축
1. 자본금		1억원 이상		
2. 기술 인력	가. 분야별 특급기술인, 기술사 또는 건축사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나. 분야별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다. 분야별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 장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비고

1. 구조물 분야 및 건축분야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기술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 궤도분야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다.
4.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

구 분		전철전력분야	신호제어분야	정보통신분야
1. 자본금		1억 이상		
2. 기술 인력	가. 분야별 철도안전전문 기술자, 특급기술인, 기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술사 등			
	나. 분야별 철도안전전문 기술자,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다. 분야별 철도안전 전문 기술자, 초급 기술인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 장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비고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5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다.
2. “기술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철도서비스의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에 따	법 제47조제4항제1호	300

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나. 법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1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2호	1,000
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법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1호	500
마.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2,000
바.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2호	500
사.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1) 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000
2)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500
3) 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000

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3호	1차 위반: 300 2차 위반: 500 3차 위반: 1,000
자.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4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5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6호	1,000
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2호	300
파.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5호	500
하. 법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정밀진단 결과보	법 제47조제3항제3호	

고서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매우 불량으로 판단한 경우		500
2)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불량으로 판단한 경우		300
거.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3호	300
너.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3호	300
더. 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 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4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00
2) 지연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500
러. 법 제44조제2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6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머.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7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200
버.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8호	200
서. 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대행 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 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9호	200
어.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영업 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10 호	2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 ①·② (생략) <u><신설></u>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려는 사 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 는 정밀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1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제31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⑥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성능 평가를 실시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 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작성해야 한다. 1. ~ 3. (생략) ⑥·⑦ (생략) <u><신설></u>	⑦ ----- 법 제33조 제7항----- -----. 1. ~ 3. (현행과 같음) ⑧·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34조의2(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신 설>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의2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의3(철도시설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5의3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신 설>

5. 장비

제34조의4(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44조의6제7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신 설>	개시를 의결하고 그 절차 가 진행 중인 경우 제34조의5(권한의 위탁) 법 제44 조의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정밀진단의 실시시기에 관 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 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 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8년 이상이 지난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밀진 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2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제2조(정밀진단의 실시시기에 관 한 특례) ----- ----- ----- ----- ----- ----- ----- ----- -----.
1. 10년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 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 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u>1</u> 년 이내	1. ----- ----- ----- 3 년 ---

2.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 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u>2</u>년 이내	1. ----- ----- ----- ---- <u>4</u>년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624